##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8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서천호·김예지·김선교

우재준 • 안철수 • 최형두

백종헌 • 김장겸 • 정성국

박성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 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 가.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나. 유기 또는 학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다. 피상속인을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 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 라.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마. 추행, 간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경우
  - 바.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7. 제924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04條(相續人의 缺格事由) 다	第1004條(相續人의 缺格事由)
	泉1004除(柏槙八名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	
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징역 3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u>확정된 자</u>
	가.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u>경우</u>
	나. 유기 또는 학대하여 상해
	에 이르게 한 경우
	다. 피상속인을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
	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
	자에게 인도한 경우
	라.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
	한 행위를 한 경우
	마. 추행, 간음 또는 영리 목
	적으로 약취, 유인 또는

<신 설>

매매한 경우

바.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
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7. 제924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자